

결격사유 확인서

성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----	--	------	-------

본인은 아래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「인사규정」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,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채용 및 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년 월 일

지원자

(서명)

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사무총장 귀하